

『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8월 30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9월 10일

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(2011.12.16)로 「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」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」를 「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」로 명칭 개정
- 가구명칭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“보건진료소”를 추가(안 제1조 ~ 2조)
- 개정된 법령 제명 반영(안 제3조 ~ 5조)

-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의 당일납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(안 제9조)

- 당일 납부에서 익일 납부(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 납부)로 개정

라. 참고사항

- 「보건복지부 훈령」, 「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(2011.12.16)로 「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」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」를 「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」로 명칭 개정
- 안 제1조 ~ 2조에 가구명칭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“보건진료소”를 추가
- 안 제3조 ~ 5조에 개정된 법령 제명 반영
- 안 제9조에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의 당일납부 규정을 익일 납부(단,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 납부)로 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목과 조항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에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